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28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4조제항제7호 신설)	3
2. 쌀을 주 원료로 하는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소기업에 대한 금융 융자·보조 등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21.
3. 회 부 일 : 2025.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특히 최근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 및 정책 부재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그 일환으로서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쌀을 활용하도록 하는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가. 제정안의 취지 및 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술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u><신설></u>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7.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7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제2122148호)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2023. 5. 19)되고 법안소위원회에 회부(2023. 6. 27.)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됨.

다.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사용 촉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특정 원료(쌀)가 아닌 ‘농산물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라. 검토의견

2025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전년대비 1.1%(0.6kg) 감소하였고, 1994년 소비량(108.3kg)에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쌀 소비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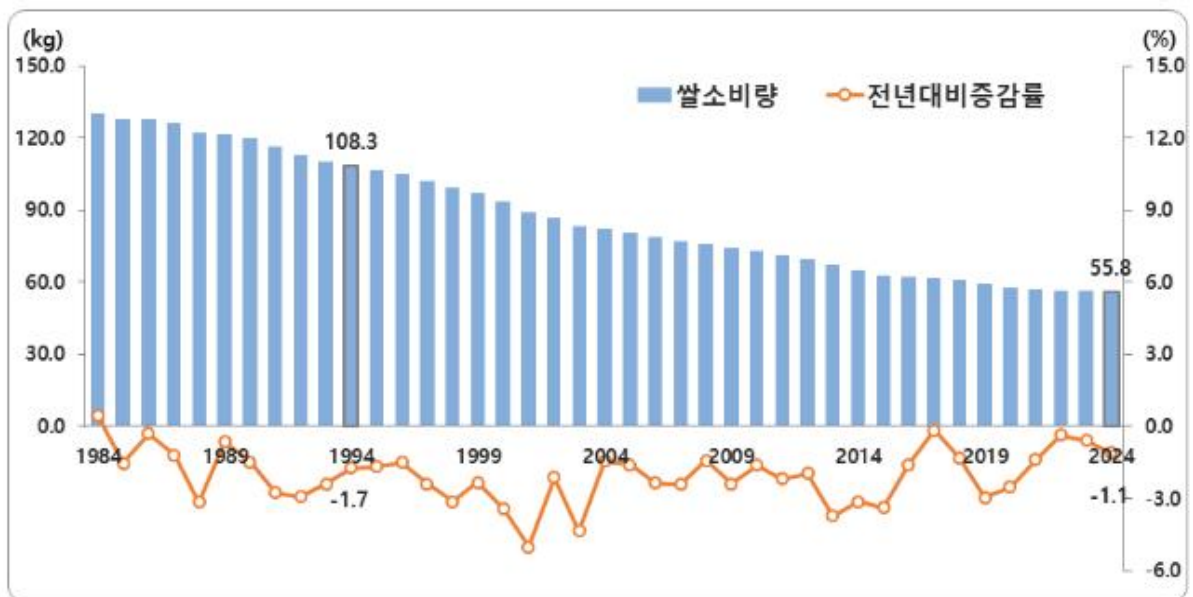
【연도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단위: kg, %)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소비량	62.9	61.9	61.8	61.0	59.2	57.7	56.9	56.7	56.4	55.8
차이	-2.2	-1.0	-0.1	-0.8	-1.8	-1.5	-0.8	-0.2	-0.3	-0.6
증감률	-3.4	-1.6	-0.2	-1.3	-3.0	-2.5	-1.4	-0.4	-0.6	-1.1

※ 자료:통계청, 2024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연도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1984-2024)】



※ 자료:통계청, 2024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① ‘전통주’는 i)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인 민속주와 ii)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등이 직접생산 또는 관할·인접소재지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드는 지역특산주를 포함하고,

② ‘전통주 등’은 ① 상기 전통주에 iii)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성 인정되는 술)을 추가한 것을 의미함.

【전통주, 전통주 등, 일반주류와의 관계】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희석식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전통주(무형문화재+식품명인+지역특산주, 국산 원료 사용)								일반주류(원료 제한 없음)			
전통주 등(수입 원료 사용 가능)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25.4.11 제출)

최근 10년간 ‘전통주 및 전통주 등 출하액 추이’를 살펴보면, 민속주는 2015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전통주 등 출하액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22년 전통주 출하액은 전년 대비 73.0% 성장하는 등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전통주 출하액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주류전체	전통주등							
		전통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구분	금액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2014	9,126,908	851,997	9.3	46,772	0.5	10,891	0.1	35,881	0.4
2015	9,361,633	1,021,422	10.9	40,882	0.4	10,335	0.1	30,547	0.3
2016	9,296,077	984,624	10.6	39,656	0.4	10,437	0.1	29,219	0.3
2017	9,243,659	959,529	10.4	40,029	0.4	10,307	0.1	29,772	0.3
2018	9,039,379	1,065,911	11.8	45,573	0.5	11,999	0.1	33,574	0.4
2019	8,941,277	1,027,639	11.5	53,128	0.6	12,167	0.1	40,961	0.5
2020	8,799,538	1,090,250	12.4	62,664	0.7	11,997	0.1	50,668	0.6
2021	8,834,540	1,192,385	13.5	94,149	1.1	10,973	0.1	83,176	0.9
2022	9,970,322	1,332,623	13.4	162,912	1.6	10,616	0.1	152,296	1.5
2023	10,069,489	1,346,435	13.4	147,531	1.5	9,905	0.1	137,626	1.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25.4.11 제출)

이러한 전통주 등 산업의 성장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통주 등의 주 원재료가 되는 국산 농산물의 수요증가로 이어져 국산 농산물의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전통주 중 탁주·약주·청주 및 증류식 소주와 같이 쌀을 주원료로 하는 주종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날 경우 쌀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 '23년 기준 주종별 전통주 출고액 】

(단위: 백만원)

주종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계
출고액	49,746	14,967	1,905	27,537	26,738	13,741	9,234	3,663	147,53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25.4.11 제출)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 육성과 전통주 시장의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 소비 진작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①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는 쌀 외에도 머루, 포도, 복분자, 밀 등 다양한 농산물로 제조하므로, 쌀에 국한된 소비 촉진의 명문화는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문구를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②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는 현행법 시행령 제2조¹⁾에 따라 현재에도 기본계획의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는 전통주 산업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 지역농업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식문화의 하나인 전통주 산업을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보이고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전통주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가. 제정안의 취지 및 내용

현행법은 주류 제조업자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전통주 품질·제조기술 향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제조기술의 향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보조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쌀 사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내국민대우²⁾ 위반으로 간주되어 통상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전통주 등의 품질·제조기술의 향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쌀을 주원료³⁾로 한다는 의미는 전통주 등의 제조 과정에서 쌀이 주된 재료로 활용되어, 주류의 주요이 된다는 뜻으로 대게 탁주·약주·청주 및 증류식 소주 등의 주종이 그에 해당됨.

개정안은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주 등 제조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전통주 등 제조업자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내산 쌀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내국민대우는 1947년 GATT 체결 당시부터 국제통상 원칙으로 도입되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개념임. 이는 WTO 협정(GATT, GATS, TRIPS)과 한국이 체결한 FTA,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국내외 규범에 폭넓게 반영되어 있음.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한편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임을 지원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제조업의 경우는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조건을 갖추고 특히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경우를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통주 등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전통주 등 제조업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위반에 대한 분쟁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산 쌀이라는 문구를 제외하는 방안, 전통주 등을 전통주로 수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반영하는 경우, 지원의 목적을 전통주 품질·제조기술의 향상에 한정할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

참고

한국술산업육성 사업 개요

- **(목적)** 전통주의 품질·경쟁력 향상, 소비·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술 소비 확대 및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 **(지원대상)** 전통주 생산·판매업체,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 **(시행주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민간경상), 지자체(지자체경상)
- **(예산규모)** ('24년) 3,101백만원 → ('25년) **3,101백만원**(전년동)
- **주요 사업내용**(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국내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소비자 및 유통업계 연계 홍보를 통한 업계 판로 확대 및 산업 활성화 도모**(260)**
 -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소비자에게 우리 술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콘텐츠 제공으로 전통주의 인지도 확산 및 소비 촉진**(440)**
 - * (주요 행사) 개막식(우리술품평회 시상식 포함), 정책홍보관, 업체관(전시·시음·판매), 공개 컨설팅, 우리술 토크콘서트, 소비자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전통주 갤러리)** 전시·체험·컨설팅 등 우리술 종합홍보플랫폼 운영으로 전통주 인지도 제고 및 다양한 정보제공**(600)**
 - **(판로확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판촉전 지원, 대형마트·편의점 연계 판촉 행사 진행 등 전통주 판매 지원**(199)**
 - **(찾아가는 양조장)** 지역의 특색있는 양조장을 발굴하여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육성**(462)**
 - **(양조장 컨설팅)** 창업자(3년 미만)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신규 제조업체의 조기 정착 유도**(160)**
 - **(양조용 발효제 보급)** 양조용 국산 효모·누룩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한 업계 품질 경쟁력 강화 도모**(140)**